

공금횡령 범죄고발 기준

제정 2010. 4. 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함) 소속직원의 공금횡령 범죄를 범한 경우의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산업진흥원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부서장과 감사담당자 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이 기준 등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기준) 원장은 범죄에 대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 결과에 따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제6조(고발처리사항 관리) ①원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척(2010. 4. 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